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 - 34호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0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신성장동력산업인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뷰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뷰티산업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

-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 위탁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 8.30(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참조 :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440-6233, 팩스 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성장동력산업인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
2.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3. 그 밖에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산업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뷰티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뷰티산업의 현황과 전망
2.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3. 뷰티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뷰티사업자의 창업 및 경영, 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뷰티산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 기술개발, 경영에 관한 정보제공
2. 뷰티산업제품 및 브랜드 개발
3.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4. 인력양성
5. 뷰티산업단지 조성
6. 뷰티산업 실태조사
7. 그 밖에 시장이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뷰티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선도뷰티업체의 지정·표시)

① 시장은 뷰티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를 선도뷰티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업체는 선도뷰티업체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도뷰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재해, 법령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뷰티산업 육성 지원계획 추진 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뷰티산업 관련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뷰티산업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뷰티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소집 및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시 출자·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공중위생관리법 ○ 제2조(정의) ☐ 화장품법 ○ 제2조(정의)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조례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

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 화장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3.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으로 제조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뷰티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제비용

○ 관련조문

- 제5조(지원사업), 제6조(선도뷰티업체의 지정·표시), 제7조(위원회 설치), 제13조(업무의 위탁)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창업, 기술개발, 경영에 관한 정보제공
- 뷰티산업 제품 및 브랜드 개발
-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 인력양성
- 뷰티산업 단지 조성
- 뷰티산업 실태조사
- 선도업체 지정
- 뷰티산업자문위원회 운영

나. 추계 결과

- 산정근거 : 뷰티도시 조성사업 중·장기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 결과
 - 뷰티도시 조성사업 추진전략 및 단계별 마스터플랜 방안을 참고하여 단기('13년~'14년), 중기('15년~'17년), 장기('18년~'20년) 단계로 나누어 산출

○ 산정내역

항 목	비 용
○ 창업, 기술개발, 경영에 관한 정보제공	시비 : 3,900,000,000원
○ 뷰티산업 제품 및 브랜드 개발	시비 : 4,240,000,000원
○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시비 : 2,001,000원
○ 인력양성	시비 1,830,000원
○ 뷰티산업 단지 조성	국비:16,500,000,000원 시비:16,500,000,000원
○ 뷰티산업 실태조사	시비 : 480,000,000원
○ 선도업체지정	시비 : 530,000,000원
○ 뷰티산업자문위원회 운영	시비 : 134,000,000원
총 투자 예상액	총 46,115,0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 16,500,000,000원, 시비 : 29,615,000,000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경제수도추진본부 미래창조경제정책관실 미래창조경제정책관 박명성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단기		중기			장기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20년	
세입	-	-	-	-	-	-	-	-
	소계							
세출	창업, 기술개발, 경영 에 관한 정보제공	300,000	300,000	500,000	500,000	500,000	1,800,000	3,900,000
	뷰티산업 제품 및 브랜드 개발	100,000	1,500,000	360,000	440,000	520,000	1,320,000	4,240,000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181,000	200,000	240,000	240,000	240,000	900,000	2,001,000
	인력양성	50,000	100,000	260,000	260,000	260,000	900,000	1,830,000
	뷰티산업단지조성	-	-	15,000,000	6,000,000	4,000,000	8,000,000	33,000,000
	뷰티산업실태조사	-	60,000	70,000	70,000	70,000	210,000	480,000
	선도업체 지정	100,000	70,000	60,000	60,000	60,000	180,000	530,000
	뷰티산업자문 위원회 운영	10,000	10,000	18,000	18,000	18,000	60,000	134,000
	소계	741,000	2,240,000	16,508,000	7,588,000	5,668,000	13,370,000	46,115,000
	재원 조달	741,000	2,240,000	16,508,000	7,588,000	5,668,000	13,370,000	46,115,000
국 비		-	-	7,500,000	3,000,000	2,000,000	4,000,000	16,500,000
시비	소 계	741,000	2,240,000	9,008,000	4,588,000	3,668,000	9,370,000	29,615,000
	일반회계	741,000	2,240,000	9,008,000	4,588,000	3,668,000	9,370,000	29,615,000
	특별회계	-	-	-	-	-	-	-
	기 금	-	-	-	-	-	-	-
군·구비		-	-	-	-	-	-	-
민 간		-	-	-	-	-	-	-
기 타		-	-	-	-	-	-	-